

# 위기학생안전망위원회(NSLB) 운영 규정

제정 : 2017. 10. 01.

개정 : 2019. 05. 03.

담당 : 학생생활상담센터(950-4317)

## ----- 목 차 -----

제1조(목적)	제2조(용어의 정의)	제3조(기능)	제4조(구성)
제5조(회의)	제6조(운영세칙)		

**제1조(목적)** 본 규정은 학칙 제53조 제1항에 의거하여 위기학생지도를 위한 위기학생안전망위원회(약칭 NSLB-No Student Left Behind 위원회)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용어의 정의)** 위기학생이라 함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.

- ① 신앙, 생활, 진로, 학습 등으로 인한 학교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자.
- ② 휴학, 자퇴 등 중도탈락 가능자, 학사경고자 및 유급자.
- ③ 기타 사유로 학업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자.

**제3조(기능)** 위원회는 다음 각 사항의 기능을 수행한다.

- ① 위기학생에 대한 진단과 평가에 관한 사항
- ② 위기학생 프로그램 계획, 운영 및 점검에 관한 사항
- ③ 위기학생 프로그램 평가 및 질 관리에 관한 사항
- ④ 입시관련 위기학생의 사전 파악과 관리에 관한 사항
- ⑤ 위기학생의 졸업 후 추수지도에 관한 사항

**제4조(구성)**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약간 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- ② 위원장은 전임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.
- ③ 당연직 위원은 각 학과장으로 하고, 그 외 위원은 관련 실무자 중에서 위원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하며, 그 임기는 보직 재임기간으로 한다.
- 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하고, 임명위원의 임기는 2년이며, 연임할 수 있다.
- ⑤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임명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.
-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, 간사는 총장이 임명한다.

**제5조(회의)** ①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.

② 위원회의 결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.

**제6조(운영세칙)** 이 규정에서 정한 것 이외의 세부 운영사항은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따로 정한다.

**부 칙**

(시행일) 본 규정은 2017년 10월 01일부터 시행한다.

**부 칙**

(시행일) 본 규정은 2019년 05월 03일부터 시행한다.